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4. 4. 18 선고 2023가단1144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중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미

담당변호사 김진모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두진, 장정훈

변 론 종 결 2024. 3. 14.

판 결 선 고 2024. 4.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1. 피고와 C 사이에,
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1. 2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2022. 10. 14. 체결된 근저당권변경계약을,

나.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10. 14. 체결된 근저당권추가설정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 2022. 1. 27. 접수 제143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나.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 2022. 10. 18. 접수 제1478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의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이다.

나. 원고는 2018. 2. 7. 소외 C과 C이 D 주식회사 부안군지부(이하 'E은행'이라 한다)로부터 대출받을 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금액(한도금액) 4,250만 원, 신용보증 거래기간 2018. 2. 13.부터 2021. 2. 13.까지로 하여 신용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2018. 2. 13. C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C은 2018. 2. 13. E은행에서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농식품기업운전자금 5,0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한다)받았다.

다. 원고는 2019. 1.경 C과 C이 E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금액(한도금액) 2,550만 원, 신용보증 거래기간 2019. 1. 29.부터 2022. 1. 29.까지로 하여 신용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2019. 1. 24. C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C은 2019. 1. 29. E은행에서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농식품기업운전자금 3,0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제2대출'이라 하고 이 사건 제1대출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받았다.

라. C은 2023. 1. 30. 이 사건 제2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원금(분할상환포함) 약정기일미변제'로 연체가 시작되었고, 2023. 2. 14. 제1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원금(분할상환포함) 약정기일미변제'로 연체가 시작되었다. 원고는 2023. 4. 13. C의 이 사건 제1대출채무 35,883,412원 및 이 사건 제2대출채무 23,141,742원 합계 59,025,154원을 E은행에 대위변제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22. 1. 말경 C과 사이에 3,000만 원을 변제기 2024. 12. 31., 이율 연 18%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22. 2. 7. C에게 근저당권설정비용을 제외한 2,940만 원을 계좌로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대여'라 한다). 피고는 2022. 1. 27. 위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피고, 채권최고액을 4,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바. C은 2022. 10. 14.경 위와 같은 변제기, 이율로 2,000만 원을 피고로부터 추가로 차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대여'라 한다). 그 후 피고는 2022. 10. 14.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1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18.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치는 한편, 2022. 10. 14. 공동담보로 별지 목록 기재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을 추가하는 내용의 근저당권 추가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추가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18.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 대해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C은 무자력인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근저당권변경계약 및 근저당권추가설정계약을 하였는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한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다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만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다17346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5다8286, 829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하여: 부존재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인 2022. 1. 27.로부터 1년 후인 2023. 1. 30. 및 2023. 2. 14.에 이르러서야 처음 연체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2022. 1. 29. C에 대한 신용조사를 거쳐 이 사건 제2대출채무에 관한 신용보증기간을 연장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비록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구상금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3) 이 사건 근저당권변경계약 및 근저당권추가설정계약에 관하여: 존재

이 사건 근저당권변경계약 및 근저당권추가설정계약 이전에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각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변경계약 및 근저당권추가설정계약이 체결된 후 4개월도 지나지 않은 2023. 1. 30. 대출금연체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 이미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 원고가 2023. 4. 13. E은행에 59,025,154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성립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변경계약 및 근저당권추가설정계약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C의 무자력

갑 제1, 4, 6 내지 13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2023. 12. 6. 자 E은행 문서제출명령 회신, 2023. 9. 14. 자 F조합 금융거래정보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이 사건 근저당권변경계약 및 근저당권추가설정계약 체결 당시 별지 재산내역표 기재와 같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은 무자력 상태임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에게 2022. 1.부터 2023. 11.까지 지급된 국가유공자연금(보훈급여금) 61,077,000원도 C의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압류금지재산은 공동담보가 될 수 없으므로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2. 2. 11. 선고 2019다250831, 250848 판결 등 참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보훈급여금을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리와 법령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변경계약 및 근저당권추가설정계약 체결일인 2022. 10. 14.을 기준으로, ① 장래 보훈급여금을 받을 권리는 압류금지재산으로서 적극재산에 포함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② 그 전에 C에게 이미 지급된 보훈급여금은 압류가 금지되지는 않으므로 적극재산이 될 수는 있다고 할 것이나, 2022. 10. 14. 당시 C이 현실적으로 보유한 보훈급여금이 얼마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 증거가 없으므로, 적극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 이외에 위 재산내역표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의 선의 여부

C이 무자력인 상태에서 체결한 이 사건 근저당권변경계약 및 근저당권추가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 볼 수 있고, C은 그로 인하여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되므로, 그 악의가 없었음은 피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변경계약 및 근저당권추가설정계약은 정상적인 금전대여 거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선의라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220132 판결 등 참조).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2023. 10. 11. 자 A중앙회 금융거래정보회신, 2023. 11. 22. 자 전북서부보훈지청 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변경계약 및 근저당권추가설정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항변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① 피고는 이 사건 제1대여계약 당시 C을 처음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C과 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대여하여 주었고, 차용증에서 정한 바에 따라 대여금을 지급한 후, 매월 이자를 지급받아 왔다. 차용증 이외에 C의 인감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서류도 교부받았다. 제1, 2대여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할 만한 사정은 찾기 어렵고, 위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한 이 사건 근저당권변경계약 및 근저당권추가설정계약도 마찬가지다.

② 피고는 2022. 2. 7.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한 후, 2022. 10.경 2,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변경계약 및 근저당권추가설정계약을 한 것인데, C은 그때까지 피고에 대한 이자 지급을 연체한 바 없다. 또한 C과 피고의 지위에 비추어 연 18%의 이자가 제1, 2대여를 비정상적 거래로 보아야 할 만큼 지나치게 고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③ 이 사건 근저당권변경계약 및 근저당권추가설정계약 당시 C은 무자력이었지만, 소극재산과

적극재산의 차이가 6,000만 원으로 그리 크지 않았고, 이 사건 제1대여에 따른 이자도 정상적으로 지급해온 만큼, 금융기관도 아닌 피고가 C의 무자력 상태를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가 C의 무자력 상태까지 알 수 있는 특별한 관계에 있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C은 그 무렵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 대부분을 연체 없이 변제하여 오기도 했다.

④ 피고는 C의 전체적인 자산 상태를 일일이 파악하여 돈을 대여하였다기보다는 C이 매월 지급받을 보훈급여금과 사과 농장 수입으로 대출원리금채무를 매월 변제받을 수 있다고 신뢰하고 돈을 대여해준 것으로 보인다. 실제 C은 이 사건 근저당권변경계약 및 근저당권추가설정계약 당시 매월 259만 원의 보훈급여금을 받을 권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금융거래내역에는 비정기적이지만 농사 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볼 만한 내역이 다수 나타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석범

별지